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08호 2017. 7. 6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7-121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고시(안) 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7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08호(2)

고 시

소하천의 점용허가 고시[안]

사천시 고시 제2017-121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07월 06일

사 천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사천시(도시과)		
	대표자 (성 명)	송도근	주소	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소하천명		죽계소하천		
공사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사천시 죽림동 1051-3번지 일원		
	면적	영구점용 : 219㎡ 일시점용 : 958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-
	기간	공사중 일시점용 : 2017.06.30 ~ 2019.06.30 공작물 설치점용 : 영구		
	목적 및 사유	죽림삼거리~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		

열람서류 :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(건설수도과 비치)